

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4. 6. 23.

제안자 : 최재옥 의원외

1. 수정이유

- 공무원이 퇴직 후 복무조례상의 비밀엄수 조항을 위반하더라도 징계별 대상이 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없으므로 적용대상자에서 “공무원이었던 자”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려는 것임.

2. 수정 주요골자

- 신설하려는 비밀엄수 조항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에서 “공무원이었던 자” 삭제

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의2 본문중 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”을 “공무원은”으로 한다.